http://dx.doi.org/10.5392/JKCA.2014.14.11.686

#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용성 평가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Profiling

**정세종**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Se-Jong Jung(jsjung@chosun.ac.kr)

**요약**

이 연구는 일선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 근무하는 형사들을 대상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활용경험, 당해 사건에서 도움을 받았는지에 여부, 향후 활용여부 등을 설문조사함으로써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외국의 선행연구와 비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응답자의 63.7%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가치 있는 수사기법이다"라는 점에 동의했고, 62.8%는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수사에 있어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응답자의 31.8%만이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에 동의했고, 특히 15.0%만이 "범죄자 프로파일링으로 인해서 수사의 오류가 발생될 위험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1.5%가 프로파일링의 도움을 받았고, 71.4%가 향후에 다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중심어 : | 범죄자 프로파일링 | 범죄수사 | 프로파일러 | 효용성 | 형사 |

**Abstract**

Criminal profiling, also known as offender profiling is designed to predict the characteristics of unknown criminal perpetrator through an analysis of the crime scene. Until now, there has been conflict about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profiling among academics.

In this study, 113 police investigators', working in serious crime divisions, were interviewed about their experiences with criminal profiling, and their belief about its effectiveness. 63.7% of the respondents agreed that criminal profiling is a valuable investigative tool and 62.8% agreed that profilers are valuable to criminal investigations. A total of 31.8% agreed that profilers help the police identify offenders and 15.0% agreed that there is no risk of profiler misdirecting and investigation. 61.5% of the respondents who had reported using a profile agreed that profiling is helpful and 71.4% told that they would use profiling again in the future.

■ keyword : | Criminal Profiling | Criminal Investigation | Profiler | Effectiveness | Detective |

## I. 서 론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현장을 분석하고 범죄현장에 남겨진 결정적인 특징들을 해석함으로써 범행동기와 범죄자의 유형을 추정하는 기법이다[11]. 우리나라에서는 '양들의 침묵', '한니발' 등의 영화와 '크리미널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7096)

접수일자 : 2014년 08월 12일
수정일자 : 2014년 09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9월 20일
교신저자 : 정세종, e-mail : jsjung@chosun.ac.kr

마인드'와 같은 미국 드라마 및 '살인자들과의 인터뷰', '마인드 헌터' 등의 번역서들이 소개되면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폭증했고, 최근에는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범죄가 발생하면 소위 프로파일러들의 인터뷰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4].

박지선과 최낙범 또한 프로파일링 관련 신문기사를 분석한 후, 긍정적 인식(61.1%)이 부정적 인식(1.9%)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활약기대(22.9%), 효과입증(18.5%), 사건해결(15.9%), 기타(3.8%) 순으로, 부정적 측면에 있어서는 과대포장(1.3%), 만능 아님(0.6%) 순으로 나타났다[2].

한편,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국내학계에서는 강력범죄자의 행동유형을 분류하거나, 과거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특정 사건들을 중심으로 가해자의 특성들을 일화적으로 기술하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국외의 경우에는 그 타당성과 효용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문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3][6][9][12][15]. 결과적으로 국내외를 불문하고 학계에서도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에 관한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현장과 범행수법을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용의자의 유형을 추정할 수 있다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수사경찰관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만한 매력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최근 우리사회에서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프로파일링을 지나치게 포장하고 이를 맹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4].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과연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사건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혹은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범죄수사에 꼭 필요한 기법인가?"에 관한 문제, 즉 효용성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일선경찰서 형사과 강력계에 근무하는 형사들을 대상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활용경험, 당해 사건에서 도움을 받았는지에 여부, 향후 활용여부 등을 설문조사함으로써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외국의 선행연구와 비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개념과 이론적 토대

동일인에 의한 범죄는 공통성을 지닌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범죄전의 준비행적, 범죄행위의 특성, 피해자의 특성, 범죄후의 행적 등의 소위(*modus operandi*: MO)를 파악하여 범죄자의 유형을 추정하는 수사기법이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심리학적 프로파일링(psychological profiling)", "행동학적 프로파일링(behavioral profiling)" 등의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1][4][5].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이론적인 토대는 정신분석학을 근간으로, 범죄자들을 성격적 특성과 범죄현장 특징을 기준으로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서 용의자를 추론할 수 있다는 범죄자 유형분류론(typologies)과 범죄행위는 범죄자의 내재된 성향(disposition)에 따라 결정된다는 기질이론(trait theory)이라고 할 수 있다[4][9].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현장분석(CSA: Crime Scene Analysis)과 수사심리분석(IP: Investigative Psychology)으로 나눌 수 있다. 범죄현장분석(CSA)는 FBI의 행동과학부(Behavioral Science Unit)가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킨 기법이다. CSA는 첫 단계에서 연쇄살인범죄자들을 성격적 특성과 범죄현장 특징을 기준으로 체계적이고 반사회적인 유형(organized nonsocial)과 비체계적이고 비사회적인 유형(disorganized asocial)으로 대별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연쇄강력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와 범죄현장의 특성을 분석한 후 용의자를 위 두 범주 중의 하나로 분류하고 보다 세부적인 프로파일링을 진행하는 기법이다[4]. 범죄심리분석(IP)은 영국의 David Canter 교수에 의해서 제안되고 발전하고 있다. 흔히 5요인 모델(five-factor model)이라고 불리는 IP 모델은 ①대인관계의 일관성(interpersonal coherence), ②시간과 장소

의 중요성(significance of time and place), ③범죄자 특성(criminal characteristics), ④범죄경력(criminal career), ⑤법과학적 지식(forensic awareness)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5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용의자를 추정한다[13].

## 2.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에 관한 논의

### 2.1 집단비교연구

Pinizzotto와 Finkel은 다수의 프로파일러, 수사관, 심리학자, 대학생을 연구대상자로 모집하였다. 그 후 모집된 대상자들을 프로파일러 집단, 수사관 집단, 심리학자 집단, 대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들에게 해결된 살인사건과 강간사건의 수사자료들(범죄현장사진, 피해자 보고서, 검시보고서, 범죄현장보고서 등)을 각각 제시하였다. 그 다음 각 대상자들에게 두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용의자의 특성을 묻는 객관식 문항들에 답변하도록 한 후 집단별로 그 타당성 혹은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첫째, 작성된 프로파일에 대한 분석에서는 살인사건과 강간사건 모두에서 프로파일러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더욱 풍부하고, 구체적이며 정확한 예측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절차 혹은 방식에 있어서는 프로파일러 집단은 다른 집단들과 비교했을 때 질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둘째, 용의자의 특성에 관한 객관식 답변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프로파일러 집단이 강간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비교적 정확한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살인사건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0].

Kocsis 등도 다수의 프로파일러, 경찰관, 심리학자, 대학생, 심령술사를 연구대상자로 모집하였다. 그 후 연구대상자들을 프로파일러 집단, 경찰관 집단, 심리학자 집단, 대학생 집단, 심령술사(psychics) 집단으로 구분하고, 해결된 살인사건의 수사자료들(범죄현장사진, 검시보고서, 법탄도학 보고서, 피해자 보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대상자들에게 첫째, 위 사건의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둘째, 용의자의 특성을 묻는 객관식 문항들에 대해서 답변하며, 셋째, 용의자의 성격적 특성을 묻는 형용사 체크리스트(Adjective Check List)에 기입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후 객관식 문항에 대한 답변들과 형용사 체크리스트를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프로파일러 집단이 다른 각각의 집단들에 비해서 정확한 예측을 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고, 일부 하위척도에서는 심리학자 집단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7].

Kocsis는 또한 다수의 경찰수사관, 화재조사관, 프로파일러, 대학교 2학년생을 연구대상자로 모집하였다. 그 후 연구대상자들을 경찰수사관 집단, 화재조사관 집단, 프로파일러 집단, 화학전공 대학교 2학년생 집단으로 구분하고, 해결된 연쇄방화사건의 수사자료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대상자들에게 용의자를 추정하는 객관식 문항들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들의 답변들을 분석한 결과 프로파일러 집단이 다른 각각의 집단에 비하여 정확한 응답을 한 수치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p < .05$.)으로 유의미하였다[8].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Pinizzotto와 Finkel의 연구에서는 프로파일러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프로파일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지만,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특히, 프로파일러 집단이 비프로파일러 집단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프로파일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찾을 수 있다. Kocsis 등의 연구에서는 프로파일러 집단이 다른 각각의 집단들에 비해서 정확한 예측을 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고, 일부 하위척도에서는 심리학자 집단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Kocsis(2004)의 연구에서는 프로파일러 집단이 다른 각각의 집단에 비하여 정확한 응답을 한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참여한 프로파일러의 수가 3명에 불과하여 통계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나타냈다[4][7][10].

### 2.2 메타분석과 사례연구

Snook 등은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2단계로 나누어서 메타분석(Meta-Analysis)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분석은 프로파일러와 경험 많은 수사관들로 이루어진 집단과 비경찰집단(심리학자와 대학생 등으로 이

루어진 집단)의 용의자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프로파일러/수사관 집단은 용의자의 전반적인 추정(r=.24)과 신체적인 특징(r=.10)에 관하여 비경찰집단에 비하여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였지만, 용의자의 인지과정(r=-.06), 범행형태(r=.00), 사회경력 및 습성(r=-.09)에 있어서는 비경찰집단과 같은 수준이거나 심지어는 부정확한 예측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이 비교적 넓어서 효과크기(Effect Size)들은 부정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분석은 프로파일러 집단과 비프로파일러 집단(경찰관과 심리학자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용의자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프로파일러 집단이 모든 측정지표에서 더욱 정확한 예측력을 보였다. 하지만 Snook 등은 신뢰구간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효과크기들은 부정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잠정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2].

Devery는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에 관한 학계의 지지도 부족하지만, 프로파일링이 난해한 연쇄강간 혹은 연쇄살인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사례 혹은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강조한다. 때때로, 사건이 해결된 후에 프로파일이 비교적 정확했다고 밝혀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여겨지는 연쇄 살인범 Garry Ridgway는 DNA 분석으로 검거되었고, 당시 John Douglas가 작성한 프로파일이 상당히 정확했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프로파일링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 용의자를 검거한 후에 프로파일과 용의자가 상당히 일치했다는 사실만으로 프로파일링이 범죄수사에 유용한 도구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강조한다. Devery는 또한 부정확한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영향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범죄자로 몰리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후 DNA 분석으로 누명을 벗게 된 여러 사례들(1996년 Atlanta 올림픽 폭파사건, Kirk Bloodsworth 사건, Guy Paul Morin 사건, Jeffrey Deskovic 사건 등)을 제시하면서 프로파일링의 오류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현재 학계에서 이러한 프로파일링의 위험성 혹은 잘못된 사례들에 대한 언급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6].

### 2.3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Copson은 영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82.6%는 프로파일이 수사과정에서 도움을 주었고, 92.4%는 향후 프로파일링을 다시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프로파일링이 수사에 도움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60.9%는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었기 때문이고, 52.9%는 기존의 수사방향에 확신을 주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응답자들의 단지 2.7%만 프로파일이 범죄자 특정에 도움을 주었고, 오직 14.1%가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17].

Trager와 Brewster는 미국에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 4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프로파일링이 사용된 범죄는 살인(79.2%), 강간(75.0%), 유괴(20.8%), 방화(18.8%), 강도(12.5%), 주거침입(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신문전략(interrogation strategies)으로 도움을 받음(62.2%), 수사방향설정(directing the investigation)에 도움을 받음(58.1%), 용의자의 향후 행위를 예측(prediction of future behavior)하는 데 도움을 받음(52.4%), 용의자 특정(identification of a suspect)에 도움을 받음(37.8%)의 순위를 보였다[14].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조사대상 경찰관들은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Snook 등은 캐나다에서 강력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 51명을 대상으로 먼저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관한 일반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고, 동의란에 기재된 수치는 응답자들이 각 진술문에 대해서 2=“동의한다”와 1=“매우 동의한다”를 선택한 비율을 합산한 것이다[1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94.2%는 “프로파일러들은 사건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92.2%는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존재이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88.2%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가치 있는

**표 1. 프로파일링에 대한 일반적 인식(%)**

| 진술문 | 동의 |
|---|---|
| 1. 프로파일러들은 수사관들이 사건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84.3 |
| 2.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가치 있는 수사기법이다. | 88.2 |
| 3.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수사에 있어 필요한 존재이다. | 92.2 |
| 4. 프로파일러들은 사건해결에 도움을 준다. | 94.2 |
| 5. 수사관들은 비록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야만 한다. | 80.4 |
| 6. 프로파일러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 80.4 |
| 7. 프로파일러들은 수사관들이 범죄자를 특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 78.4 |
| 8.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74.5 |
| 9.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자의 심리파악에 능숙하다. | 70.5 |
| 10. 프로파일러들은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한다. | 58.8 |
| 11. 프로파일러들의 효용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 60.8 |
| 12. 프로파일러들은 수사관들은 미처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해준다. | 54.9 |
| 13. 범죄수사과정에서 프로파일러들을 통상적으로 참여시켜야만 한다. | 51.0 |
| 14.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자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 65.1 |
| 15.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법정의 증거로 활용되어야만 한다. | 33.3 |
| 16.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모든 종류의 범죄에 활용되어야만 한다. | 13.7 |
| 17. 범죄자 프로파일링으로 인해서 수사의 오류가 발생될 위험은 없다. | 5.9 |

수사기법이다"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13.7%만이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모든 종류의 범죄에 활용되어야만 한다"에 동의했고, 특히 5.9%만이 "범죄자 프로파일링으로 인해서 수사의 오류가 발생될 위험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Snook 등은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찰관 29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이 프로파일링을 적용한 범죄는 살인(55.2%), 성폭력(37.9%), 주거침입(3.4%), 가중폭력(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범죄수사에 있어서 프로파일러들의 효용성을 측정(10점 척도: 1=동의하지 않는다, 10=동의한다)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인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은 보통이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건해결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6].

**표 2. 프로파일링의 효용성**

| 질문 | 평균 | 표준편차 |
|---|---|---|
| 1. 실무상 프로파일러들의 조언이 어느 정도로 효용성이 있는가? | 6.41 | 2.40 |
| 2. 프로파일러들은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용의자의 특성을 예측하는가? | 6.07 | 3.16 |
| 3. 새로운 수사방향을 설정하는데 프로파일러의 조언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 5.24 | 2.79 |
| 4. 프로파일러의 조언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 4.07 | 2.79 |

Snook 등의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캐나다의 조사대상 경찰관들은 전반적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프로파일링의 적용한계와 오류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6].

## Ⅲ.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광주지방경찰청 산하의 모든 경찰서(동부경찰서, 서부 경찰서, 남부 경찰서, 북부 경찰서, 광산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 근무하는 형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강력팀 형사들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을 전담하기 때문에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적용되는 사례를 비교적 빈번하게 경험하였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먼저 각 경찰서에서 형사업무를 총괄하는 형사과장을 면담하여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2014년 7월 28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각 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135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115부 중에서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설문지 2부를 제외하고 113부를 SPS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0세 미만은 2명(1.8%), 30세~39세 21명(18.6%), 40세~49세 71명(62.8%), 50세 이상 19명(16.8%)을 나타냈고, 계급은 경장 이하 17명(15%), 경사 35명(31.0%), 경위 이상 61명(54.0%)을 보이고, 학력은 고졸 이하 23명(20.4%), 전문대졸 35명(31.0%), 대졸 이상 53명(46.9%)을 나타냈으며, 경찰경력은 평균

17.62년(표준편차 6.90), 수사경력은 평균 11.61년(표준편차 6.65), 강력수사경력은 평균 10.25년(표준편차 6.60)의 분포를 보였다.

## 2. 측정지표

본 연구에서 측정변인은 첫째, 연령, 계급, 학력, 경찰경력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둘째,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개인적인 견해(개방형 질문), 셋째,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활용한 경험이 있는 형사들만을 대상으로 활용 사건의 수, 사건의 죄명,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도움 된 이유(개방형 질문), 향후 활용여부, 향후 활용이유(개방형 질문)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개념의 다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문지에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란 범죄현장, 범죄행위의 특성, 범죄피해자의 특성, 범죄후의 행적 등을 분석하여 범죄자의 유형(성격, 직업, 혼인유무, 주거형태, 연령 등)을 추정하는 수사기법을 말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한편,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 관한 질문은 Snook 등이 2007년에 캐나다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진술문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측정방법은 각 진술문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파악하였다(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아니다, 5=전혀 아니다)[16].

# Ⅳ. 연구결과

## 1.범죄자 프로파일링에 관한 일반적 인식

5점 척도로 측정한 프로파일링의 일반적 인식(역코딩)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평균이 3.4703이고 표준편차는 0.53585이다. 이는 응답자들이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보통(3점)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고, Cronbach α 값이 0.93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연령, 계급, 학력에 따른 평균치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고, 경찰근무경력, 수사경력, 강력수사경력과의 상관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대상자들이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고, 동의란에 기재된 수치는 응답자들 각 진술문에 대해서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을 합산한 것이다.

**표 3. 프로파일링에 대한 일반적 인식(%)**

| 진술문 | 동의 |
|---|---|
| 1. 프로파일러들은 수사관들이 사건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49.6 |
| 2.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가치 있는 수사기법이다. | 63.7 |
| 3.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수사에 있어 필요한 존재이다. | 62.8 |
| 4. 프로파일러들은 사건해결에 도움을 준다. | 53.1 |
| 5. 수사관들은 비록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야만 한다. | 77.8 |
| 6. 프로파일러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 53.1 |
| 7. 프로파일러들은 수사관들이 범죄자를 특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 43.3 |
| 8.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58.4 |
| 9.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자의 심리파악에 능숙하다. | 56.6 |
| 10. 프로파일러들은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한다. | 58.4 |
| 11. 프로파일러들의 효용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 40.7 |
| 12. 프로파일러들은 수사관들은 미처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해준다. | 47.8 |
| 13. 범죄수사과정에서 프로파일러들을 통상적으로 참여시켜야만 한다. | 42.5 |
| 14.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자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 31.8 |
| 15.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법정의 증거로 활용되어야만 한다. | 40.7 |
| 16.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모든 종류의 범죄에 활용되어야만 한다. | 39.9 |
| 17. 범죄자 프로파일링으로 인해서 수사의 오류가 발생될 위험은 없다. | 15.0 |

자세하게 언급하면, 응답자의 63.7%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가치 있는 수사기법이다"는 점에 동의했고, 62.8%는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수사에 있어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응답자의 31.8%만이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에 동의했고, 특히 15.0%만이 "범죄자 프로파일링으로 인해서 수사의 오류가 발생될 위험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검거이후 분석만 하고 있다”,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범죄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다”, “형사들에게 프로파일링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등을 기술하였다.

### 2.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용성

연구대상자 113명 중에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총 20명(17.7%)으로 나타났다. 평균 활용건수는 2건이고 표준편차는 1.05409이다. 이들이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범죄(다중응답)는 살인 8건(30.8%), 성폭력 8건(30.8%), 강도 4건(15.4%), 유괴 2건(7.7%), 강도강간 1건(3.8%), 절도 1건(3.8%), 방화 1건(3.8%), 감금치사 1건(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프로파일링이 당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여부를 묻는 질문에 13명만이 응답하였다. 그 중 8명(61.5%)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5명(38.5%)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도움이 된 이유로는 “피의자에 대한 심리적 이해”, “자백획득 용이”, “범인추정에 도움” 등을 제시하였고,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수사방향 혼선초래”, “개별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연구자료로 활용”, “사건해결보다는 검거 후에 피의자 심리파악에 치중” 등을 기술하였다.

향후 활용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총 14명이 응답하였는데 10명(71.4%)은 향후 활용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4명(28.6%)은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향후 활용할 이유로는 “범죄를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서”, “범죄자 특성을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자백획득에 용이하기 때문” 등으로 제시하였고, 활용하지 않을 이유로는 “피의자 특정에 도움 되지 않음”, “수사의 방해요소” 등으로 기술하였다.

이상의 설문조사결과를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의 조사대상 경찰관들은 전반적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프로파일러의 범죄자 특성 예측의 한계와 프로파일링의 오류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효용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범죄수사업무를 다년간 경험해 보았던 연구자의 선입견에 더해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비판적인 선행연구들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이었다[4][6][9][12][15]. 따라서 영국과 캐나다 및 미국에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들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14][16][17].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광주지방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은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아마도 형사들은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학문이라기보다는 여러 수사기법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피의자의 유형을 추정 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활용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개략적이나마 외국의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을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에 프로파일링이 도입된 역사가 비교적 짧고, 전문 인력과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 중 프로파일링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1.5%가 프로파일링의 도움을 받았고, 71.4%가 향후에 다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실제 강력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들의 인식과 경험적 판단은 프로파일링의 효용성 평가에 중요한 변수로 고려될 수밖에 없고 잠정적이나마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사경찰관들이 프로파일링이 범죄자 특정에 한계가 있고, 오류가능성이 높다고 일관되게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프로파일링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선 강력계 형사들을 대상으로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살펴보았지만 몇 가지

한계도 갖고 있다. 첫째는 국내 전체 일선경찰서의 강력팀 형사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특정 광역시의 형사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는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분석, 참여관찰, 심층면접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병행하여야만 하지만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만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이 구사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1] 박광배, 배현정,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유용성: 수사실무를 위한 미시적 활용과 정책평가를 위한 거시적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제21권, 제1호, pp.1-24, 2001.

[2] 박지선, 최낙범, “범죄자 프로파일링 관련 신문기사 내용분석”,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3호, pp.35-53, 2011.

[3] 박현호, 오경석, “범죄 프로파일링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경찰 범죄분석요원 및 기존 수사관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9권, 제2호, pp.59-88, 2010.

[4] 정세종,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범죄심리연구, 제8권, 제2호, pp.149-164, 2012.

[5] 홍성열, *범죄자 프로파일링*, 학지사, 2011.

[6] C. Devery, "Criminal Profiling & Crim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Vol.26, No.4, pp.393-409, 2010.

[7] R. N. Kocsis, H. J. Irwin, A. F. Hayes, and R. Nunn, "Expertise in Psychological Profiling: A Comparative Assessm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15, pp.311-331, 2000.

[8] R. N. Kocsis, "Psychological Profiling of Serial Arson Offenses an Assessment of Skills and Accurac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31, pp.341-361, 2004.

[9] D. A. Muller, "Criminal Profiling : Real science or Just wishful thinking?," Homicide Studies, Vol.4, pp.234-263, 2000.

[10] A. J. Pinizzotto and N. J. Finkel, "Criminal Personality Profiling : An Outcome and Process Study," Law and Human Behavior, Vol.14, No.3, pp.215-233, 1990.

[11] R. K. Ressler, A. W. Burgess, and J. E. Douglas, *Sexual Homicide: Patterns and Motives,* The Tree Press, 1995.

[12] B. Snook, J. Eastwood, P. Gendreau, C. Goggin, and R. M. Cullen, "Taking Stock of Criminal Profiling: A Narrative Review and Meta-Analysi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34, pp.437-453, 2007.

[13] B. E. Turvey, *Criminal Investigation(4th eds) :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Academic Press, 2011.

[14] J. Trager and J. Brewster, "The Effectiveness of Psychological Profiles,"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Vol.16, No.1, pp.20-28, 2001.

[15] B. Snook, R. M. Cullen, C. Bennell, P. Taylor, and P. Gendreau, "The Criminal Profiling Illusion: What's Behind the Smoke and Mirro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35, pp.1257-1276, 2008.

[16] B. Snook, P. Taylor, and C. Bennell, “Criminal Profiling Belief and Use: A Study of Canadian Police Officer Opinion," The Canadian Journal of Police and Security Services, Vol.5, pp.1-11, 2007.

[17] G. Copson, *Coals to Newcastle? Part One: A study of offender profiling.* Police Researcher Group, Home Office Police Department, 1995. In B. Snook, P. Taylor and C. Bennell, “Criminal

Profiling Belief and Use: A Study of Canadian Police Officer Opinion," The Canadian Journal of Police and Security Services, Vol.5, pp.1-11, 2007.

## 저 자 소 개

**정 세 종(Se-Jong Jung)** 정회원

- 2000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학 석사
- 2005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범죄수사, 경찰행정